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등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05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 대상 확대 등(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현 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2. 7.

다.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 대상 확대 등(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는</u> 고의 또는 과실로 <u>국가유산수리</u> 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u> ----- <u>국가유산수리</u> <u>등을</u> ----- ----- -----.
② <u>국가유산수리업자는</u>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u>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u>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u>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2. (생략) <u><신설></u> 7. ~ 10. (생략) ② (생략)	<u>협·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u> 1. <u>국가</u> 2. <u>지방자치단체</u> 3.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u>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2조(과태료) ① -----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¹⁾.
- 그런데, 국가유산수리 과정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제외되어 있음. 또한,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²⁾ 의무 가입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정의)

-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보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
- **공제**: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가유산 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 대상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 수리를 원활히 수행하여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수리지연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건축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³⁾.

3)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 한편, 안 제62조제1항제6의3호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입법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태료라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유사입법례를 보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⁴⁾, 「건축사법」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으나, 「건축사법 시행령」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방사업자가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일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⁵⁾.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공제 상품 마련 및 관계기관 간 협의 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 계상은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 없이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③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발주자와 국가유산수리등 <u>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u> 적용한다.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안)이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음⁶⁾.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및 범위) 박수현의원안은 제34조제1항에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임오경의원안은 제54조의3제1항에서 “국가유산수리등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로 목적물인 국가유산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일) 박수현 의원안은 제34조 및 제62조의 내용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임오경 의원안은 제34조의 내용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3 및 제62조의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의안번호 제2207494호(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5.1.14. 발의, 2025.2.19. 전체회의 상정/소위원회부)

-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박수현 의원안은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임오경 의원안은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박수현 의원안	임오경 의원안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u> <u>---국가유산수리등을-----</u> <u>을-----</u> ----- ----- -----.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u> ----- ----- ----- -----.
<신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공제의 가입)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u>	제5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u>

	<u>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u> 1. <u>국가</u> 2. <u>지방자치단체</u> 3.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공공기관</u> 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② 제1항에 따른 <u>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② <u>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u> 1. <u>국가</u> 2. <u>지방자치단체</u> 3.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공공기관</u> 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③ 제2항에 따른 <u>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제62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 ----- ----- -----.	제62조(과태료) ① --- ----- ----- ----- -----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 음)
<신 설>	6의3. 제34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보 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 지 아니한 자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4조의 3, 제37조의3, 제54조 의2 및 제56조제2항 제8호·제9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11 호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 46조제2항 및 제53조 제4항·제5항의 개정

<u><신 설></u>	<u>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u> <u>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발주자와 국가유산수리등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u> <u>제34조·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문 의 처
02)6788-5379